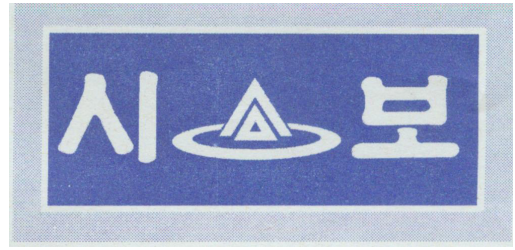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관의 장 |
| 람 | |

제 395호 2010. 4. 15.(목)

【조 례】

- 제714호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제715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제716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제717호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제718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제719호 공주시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 33
- 제720호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 34
- 제721호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35
- 제722호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41
- 제723호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 47
- 제724호 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제725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 제726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규 칙】

- 제375호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63
- 제376호 공주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68
- 제377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105

【고 시】

- 제2010 - 2호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지정 고시 112
- 제2010 - 53호 공주 정안 1 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115
- 제2010 - 55호 공주시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고시 122

【공 고】

- 제2010 - 448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6
- 제2010 - 451호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92
- 제2010 - 453호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95

| | | | | | | | |
|--------|--|--|--|--|--|--|--|
| 회 람 | | | | | | | |
|--------|--|--|--|--|--|--|--|

공주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3. 31.)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714 호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6월” 을 각각 “6개월” 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회 위원 위촉은 필요할 때 위촉하고, 심의사항 결정과 동시에 자동 해촉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통할” 을 “총괄” 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3호, 제10조제4호, 제15조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보상금 청구)</p> <p>① (생 략)</p> <p>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u>6월</u>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자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u>6월</u>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p> | <p>제6조(보상금 청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6개월</u> ----- ----- -----<u>6개월</u> ----- ----- ----- ----- -----</p> |
| <p>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의 구성)</p> <p>① (생 략) <u><신 설></u></p> <p>②~③(생 략)</p> | <p>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의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심의회 위원 위촉은 필요할 때 위촉하고, 심의사항 결정과 동시에 자동해촉 한다.</u></p> <p>③~④ (중전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
| <p>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주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u><삭 제></u></p> |
| <p>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p> <p>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p> <p>② (생 략)</p> | <p>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p> <p>① ----- -----<u>총괄</u>----- ② (현행과 같음)</p> |

공주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3.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715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상신 보건진료소, 장원 보건진료소, 모란 보건진료소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

| | | |
|----------|----------------|---|
| 상신 보건진료소 | 반포면 상신리 473 -1 | 상신리, 하신리, 온천1·2리 |
| 장원 보건진료소 | 정안면 장원리 456 -6 | 장원 1·2리, 운궁리, 고성리 쌍달리, 석송리 |
| 모란 보건진료소 | 정안면 화봉리 76 | 상용리, 화봉 1·2리, 전평리 북계 1·2리, 평정 1·2리, 의당면 오인리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 | 개정안 | | |
|-------------|-------------------|--|-------------|-------------------|--|
| 별표 1 | | | 별표 1 | | |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 |
| 상신 보건진료소 | 반포면 상신리 473 -1 | 상신리, 하신리 | 상신 보건진료소 | 반포면 상신리 473 -1 | 상신리, 하신리, <u>온천1·2리</u>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 |
| 장원 보건진료소 | 정안면 장원리 456 -6 | 장원 1·2리, 운궁리, 고성리, 쌍달리, <u>북계리</u> , 석송리, <u>전평리</u> | 장원 보건진료소 | 정안면 장원리 456 -6 | 장원 1·2리, 운궁리, 고성리, 쌍달리, 석송리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 |
| 모란 보건진료소 | 정안면 화봉리 76 | 상용리, <u>화봉리</u> , <u>북계리</u> 의당면 오인리 | 모란 보건진료소 | 정안면 화봉리 76 | 상용리, <u>화봉 1·2리</u> , <u>북계 1·2리</u> , <u>전평리</u> <u>평정 1·2리</u> , 의당면 오인리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 |

공주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3.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716 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별표 1 중 정안면 보물리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종전의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일원
- 종전의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198-3, 산26, 산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 | 개 정 안 | | |
|---------------|-----|--|---------------------------|-----|---|
| [별표1] | | | [별표1] | | |
| 읍면명 | 리명 | 구 역 | 읍면명 | 리명 | 구 역 |
| 정안면 | 보물리 | <u>○ 종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일원</u> <u>○ 종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181-7, 181-9</u> | 정안면 | 보물리 | <u>○ 종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일원</u> <u>○ 종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198-3, 산26, 산27</u> |

공주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3. 31.)에서 의결된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717 호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영”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3”을 “별표2”로 한다.

제3조 중 “제18호의 라목 내지 바목”을 “제7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 지급 대상 | 지급액 |
|--|------------|
| ① 화장장· 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 월 240,000원 |
| ② 공원묘지· 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 월 240,000원 |
| ③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 월 180,000원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개정이유 |
|--|---|---|
| <p><u>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u> 제14조에서 <u>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u>공무원</u>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u>별표3</u>의 지급 구분표 <p>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u>제18호의 라목 내지 바목</u>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u>별표2</u>와 같다</p> | <p><u>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 「<u>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u>」 ----- ----- <u>지방공무원</u> ----- ----- ----- -----</p> <p>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u>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u>」 (이하 “영” 이라 한다)---- <u>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u> ----- ----- ----- ----- ----- ----- <u>별표2</u>의 지급 구분표</p> <p>제3조(장려수당) ----- <u>제7호의 라부터 바목까지</u> ----- ----- ----- ----- ----- <u>별표3</u> -----</p> | <p>제명 변경</p> <p>조문 변경</p> <p>조문 변경</p> <p>조문 변경</p> |

공주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3.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718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 5백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1의2 규정에 따라 시장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별표 25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경사도가 20°이하여야 한다. 다만, 20° 이상인 경우는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I 등급(비오톱(생물소 공간)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II등급(비오톱(생물소 공간)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 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에 한한다.

제19조 본문 중 “도로를 말한다”를 “도로를 말한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도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9조제24호 중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를 “계획관리지역에서”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제16호 중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를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유원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40퍼센트 이하”를 “40퍼센트 이하(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로서 2003년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3조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집단시설지구와 밀집취락지구”를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기준에 의한 사업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낮은 사업장인 경우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규모별 기준에 의한 사업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인 경우

제65조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한다.

별표 3 제10호 괄호1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호 괄호2 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1호”로 하며, 같은 호 괄호3과 괄호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괄호6 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

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행정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별표 4 제16호 중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여”를 “지침 및 기준(지침 및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주시 최고고도지구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지침」에 따른다)을 마련하여”로 한다.

별표 5 제12호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로,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별표 제15호 중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8호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별표 7 제12호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별표 8 제13호 중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여”를 “지침 및 기준(지침 및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주시 최고고도지구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지침」에 따른다)을 마련하여”로 한다.

별표 9 제14호 중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여”를 “지침 및 기준(지침 및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주시 최고고도지구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지침」에 따른다)을 마련하여”로 한다.

별표 10 제9호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별표 15 제8호 괄호1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호 괄호2 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1호”로 하며, 같은 호 괄호3과 괄호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별표 18 제9호 괄호1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 로 하고, 같은 호 괄호2 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1호” 로 하며, 같은 호 괄호3과 괄호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별표 19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를 삭제한다.

- 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별표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별표 18 제9호 (1) 부터 (4)에 해당하는 것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별표 2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관련, 4층 이하의 건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 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3.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5.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8.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 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 다.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 라.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유구천에 한한다)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 마.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인 지역(별표19 제10호의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면소재지로서 시장이 고시한 지역과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반경 15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비고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3. 모든 거리는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 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이유 |
|--|--|---------------------------|
| <p>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p> <p>1.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p> <p>2. 높이 4미터 이하로서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p> | <p>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B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이고,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 5백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p> <p>4.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p> | <p>영 제 4 1 조 제 5 항 반영</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이유 |
|---|--|---------------------|
| <p>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p> <p>①영 별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1. 도시계획구역안 임상은 산림형질변경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척이 헥타르당 공주시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p> <p>2. 도시계획구역안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하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25에 의한다). 다만, 공공시설에 한하여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p> <p>3. 삭제</p> <p>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I 등급 [비오톱(생물소 공간)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II등급 [비오톱(생물소 공간)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아닌 토지</p> <p>②제1항의 규정은 제21조와 제23조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 <p>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p> <p>영 별표1의2 규정에 따라 시장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p> <p>1. 입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제외한다.</p> <p>2. 별표 25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경사도가 20°이하여야 한다. 다만, 20°이상인 경우는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p> <p>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I 등급 [비오톱(생물소 공간)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II등급[비오톱(생물소 공간)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에 한한다.</p> | <p>불합리한 허가기준 개정</p> |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이유 |
|---|--|-----------------------------------|
| <p>제46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p> <p>1. (생략)</p> <p>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p> <p>3. (생략)</p> | <p>제46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p> <p>3. (현행과 같음)</p> | <p>타법령 개정사항 반영</p> |
| <p>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생략)</p> <p>1. ~ 15. (생략)</p> <p>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p> <p>17. ~ 18. (생략)</p> <p>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p> <p>20. ~ 21. (생략)</p> | <p>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p> <p>1. ~ 15. (현행과 같음)</p> <p>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유원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p> <p>17. ~ 18. (현행과 같음)</p> <p>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건폐율 50퍼센트 이하)</p> <p>20. ~ 21. (현행과 같음)</p> | <p>영 제84조 제5항 및 영 제84조 제7항 반영</p> |
| <p>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p> | <p>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p> | |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이유 |
|---|---|--|
| <p>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집단시설지구와 밀집취락지구인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p> <p>5. ~ 6. (생략)</p> <p><신설></p> | <p>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인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p> <p>5. ~ 6. (현행과 같음)</p> <p><u>제60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u>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기준에 의한 사업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낮은 사업장인 경우</p> | <p>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p> <p>영 제93조 제2항 반영</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이유 |
|--|--|-----------------------|
| <p>제65조(회의운영)</p> <p>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생략)</p> | <p>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p> <p>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규모별기준에 의한 사업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인 경우</p> <p>제65조(회의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 <p>영 제 111 조 의 반영</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이유 |
|---|---|---------------------------|
| <p>[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p> <p>1. ~ 9. (생략)</p> <p>10. (생략)</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하는 것</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5) (생략)</p> <p>(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p> <p>11. ~ 15. (생략)</p> | <p>[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현행과 같음)</p> <p>(1) ----- 제2조제9호에 -----</p> <p>(2) ----- 제2조제11호에 -----</p> <p>(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p> <p>(5) (현행과 같음)</p> <p>(6) ----- 제7조에 -----</p> <p>11. ~ 15. (현행과 같음)</p> | <p>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
| <p>[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p> <p>1. ~ 15. (생략)</p> | <p>[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p> <p>1. ~ 15. (현행과 같음)</p> | <p>도시 관리 방안 지침과 조례 연계</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이유 |
|--|---|---------------------|
| <p>16. 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저층 개발(16m 이하)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경관 및 높이 등은 역사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주 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u>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여</u>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 <p>16. ----- ----- ----- ----- ----- ----- ----- <u>지침 및 기준(지침 및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주시 최고고도지구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지침」에 따른다</u>)을 마련하여 ----- -----</p> | <p>타법령 개정 사항 반영</p> |
| <p>[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 ~ 11. (생략)</p> <p>12.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u>액화가스 판매소</u>,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u>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u>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p> <p>13. ~ 14. (생략)</p> <p>15. 별표1 제23호의 <u>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u></p> <p>16. ~ 17. (생략)</p> | <p>[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 -----<u>액화가스</u> -----<u>취급소·판매소</u>, ----- ----- <u>저공해자동차의</u>----- ----- -----</p> <p>13. ~ 14. (현행과 같음)</p> <p>15. -----<u>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u></p> <p>16. ~ 17. (현행과 같음)</p> | <p>타법령 개정 사항 반영</p> |
| <p>[별표 6] 준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 ~ 7. (생략)</p> | <p>[별표 6] 준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 ~ 7. (현행과 같음)</p> | <p>타법령 개정 사항 반영</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이유 |
|---|---|----------------------|
| <p>(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5) (생략)</p> <p>9. ~ 14. (생략)</p> <p>[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p> <p>1. ~ 8. (생략)</p> <p>9. (생략)</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하는 것</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10. ~ 16. (현행과 같음).</p> | <p>(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p> <p>(5) (현행과 같음)</p> <p>9. ~ 14. (현행과 같음)</p> <p>[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현행과 같음)</p> <p>(1) ----- 제2조제9호에 -----</p> <p>(2) ----- 제2조제11호에 -----</p> <p>-----</p> <p>(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p> <p>10. ~ 16. (현행과 같음).</p> | <p>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이유 |
|---|--|-------------------|
| <p>[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p> <p>1. ~ 10. (생략)</p> <p>11. <u>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u></p> <p>(1) <u>별표18 제9호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u></p> <p>(2) <u>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u></p> <p>(3) <u>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u></p> <p>(4) <u>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u></p> <p>(5) <u>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u></p> | <p>[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u>별표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u></p> <p>(1) <u>별표 18 제9호 (1)부터 (4)에 해당하는 것</u></p> <p>(2) <u>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u></p> <p>(3) <u>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u></p> <p>(4) <u>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u></p> <p>(5) <u>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u></p> | <p>영 개정 사항 반영</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이유 |
|--|--|-----------------------------|
| <p>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1) 제11호의(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p> <p>(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p> <p>(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13. ~ 16. (생략)</p> | <p>12. <삭제></p> <p>13. ~ 16. (현행과 같음)</p> | |
| <p>[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부칙 제13조제1항과 관련)(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2호 중 휴게음식점, 3호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15호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p> | <p>[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9조 관련, 4층 이하의 건물에 한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p> | <p>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적용기준 변경</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이유 |
|--|---|-----------------------------------|
| <p>2. <u>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u></p> <p>3. <u>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u></p> <p>4. <u>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u></p> <p>5. <u>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u></p> <p>6. <u>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u></p> <p>7. <u>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u></p> <p>8. <u>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u></p> <p>9. <u>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u></p> <p>10. <u>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u></p> <p>11. <u>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관광농원 또는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u></p> <p>12. <u>별표 18 제9호 및 별표 19 제11호·제12호의 공장</u></p> <p>13. <u>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u></p> <p>14. <u>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u></p> <p>15. <u>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u></p> <p>16. <u>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u></p> <p>17. <u>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u></p> | <p>2. <u>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u></p> <p>3. <u>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 집회장</u></p> <p>4. <u>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u></p> <p>5. <u>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u></p> <p>6. <u>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u></p> <p>7. <u>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u></p> <p>8. <u>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u></p> <p>9. <u>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u></p> <p>10. <u>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u></p> <p>11. <u>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u></p> <p>12. <u>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u></p> <p>13. <u>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u></p> | <p>타 법령 개정 에 따른 기준 완화 및 용어 정의</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이유 |
|---|---|------|
| <p>【별표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p> <p>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p> <p>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p> <p>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다.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라.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 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국가하천은 200미터, 지방 1급하천은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p> <p>마.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인 지역(별표19 제 10호 또는 별표23 제11호의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면소재지로서 시장이 고시한 지역과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반경 15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지역을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비고</p> <p>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p> | <p>[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p> <p>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p> <p>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다.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p> <p>라.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유구천에 한한다)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p> <p>마.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인 지역(별표 19 제10호의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면소재지로서 시장이 고시한 지역과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 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반경 15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지역을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비고</p> <p>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p>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이유 |
|--|---|------|
| <p><u>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u></p> <p>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p> <p>3. 모든 거리는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말한다.</p> | <p><u>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u></p> <p>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p> <p>3. 모든 거리는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말한다.</p> | |

공주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3. 31.)에서
의결된 공주시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719 호

공주시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

공주시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3. 31.)에서
의결된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720 호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3.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721 호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어촌”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주시는 농어업·농어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제2장 분야별 책무와 지원대상

제4조(시의 책무) 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의 책무) 공주시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의 책무) 공주시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공익기능의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어업관련 주체간 협력)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 농업의 육성) 시장은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하며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용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6.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3. 농산물의 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4. 농산물의 가공·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미래의 농업 인력육성(전업농, 창업농, 후계자 등)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6.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7.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개선사업
8.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9.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0.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1.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12.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13.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는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촌 학교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촌 관광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활성화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0.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11.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적극 육성·지원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 내지 제5항 외 그 밖의 지역농업개발 및 농가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 제10조(지원신청) ①농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결정)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

설치된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농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사후관리) ①시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보상 등) ①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하여 추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3.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722 호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다)」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공주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써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장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복지사업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응답 및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정책사업에 대한 여성농업인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제12조(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 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13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다양한 순회·현장·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국내 및 국외연수 등)
4.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4장 여성농업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제14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주 농어촌여성 등 정착지원) 시장은 이주 농어촌여성 및 귀농 여성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어촌여성 교육·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교육 실시
4.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3. 31.)에서
의결된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723 호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3.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724 호

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9조의2”를 “제16조”로, “제9조의2제2호”를 “제16조제2호”로 한다.

제3조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주시 전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으로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6조 본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제6조제1항제5호”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6조의3제4호”를 “제10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각 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63조제3항제2호”를 “제68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3조제1항제1호”를 “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6에 의하고,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윤을 징수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수수료납부필증의 무료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납부필증을 무료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2. 화재 또는 자연재해 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2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제6조의3“을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재질 등

| 구분 | 규격 (내부용량) | 구조 | 허용오차 | 재질 |
|--------|------------------------------|--|------|--------------------|
| 전용수거용기 | 5ℓ (가정용)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5% | 프라스틱 (PE, HDPE) |
| | 25ℓ (음식점 등)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5% | 프라스틱 (PE, HDPE) |
| | 120ℓ (음식점 등 및 상하차용) | 용기하부에 바퀴가 있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며 뚜껑이 밀폐된 구조 | ±5% | 프라스틱 (PE, HDPE) |

○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5조 관련)

| 구분 | 규격 | 바탕색 | 기능 |
|--------------------|------|------------|----|
| 단독주택 및 음식점 등 | 5ℓ | 150mm×30mm | 노랑 |
| | 25ℓ | " | 빨강 |
| | 120ℓ | " | 녹색 |

○ 특 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 부착
- 용기외부에 내부용기 용량(5, 25, 120ℓ)표기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kg의 내용물을 투입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파손이 없어야 함
- 용기전면에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함”·“공주시”·“관리표찰”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을 적절한 크기로 인쇄
- 용기 뚜껑상부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함 이용안내문”을 인쇄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등

| 구 분 | 공동주택의 경우 | 감량의무화 사업장 및 개인주택의 경우 |
|------|---|--|
| 설치장소 | 단지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나 다수 주민이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 당해 사업장 토지 및 건물내의 적당한 곳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
| 설치수량 | 350세대당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2일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
| 관 리 | 공동주택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 | 사업장 관리인, 통장 또는 이·반장 |

【별표 6】

○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단위: 원)

| 구 분 | 판매단위 | 공급액 | 위탁판매 수수료 (6%) | 소매판매 수수료 (9%) | 판매가격 |
|--------------|------|-----|---------------|---------------|-------|
| 단독주택 및 음식점 등 | 5ℓ | 1매 | 147 | 9 | 170 |
| | 25ℓ | 1매 | 736 | 44 | 850 |
| | 120ℓ | 1매 | 3,522 | 211 | 4,070 |

○ 공동주택 수거수수료

(단위: 월/원)

| 구 분 | 세대당 총 부과금액 | 부과징수 및 관리비용(3%) | 수거비용 |
|---------|------------|-----------------|--------|
| 100㎡ 이하 | 675 | 20.25 | 654.75 |
| 100㎡ 이상 | 843.75 | 25.31 | 818.44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생략)</p> <p>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의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3 ~ 4(생략)</p>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현행과 같음)</p> <p>2. <u>제6조</u></p> <p><u>제2호</u></p> <p>3 ~ 4(현행과 같음)</p>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현행과 같음)</p> <p>2. <u>제6조</u></p> <p><u>제2호</u></p> <p>3 ~ 4(현행과 같음)</p>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현행과 같음)</p> <p>2. <u>제6조</u></p> <p><u>제2호</u></p> <p>3 ~ 4(현행과 같음)</p>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현행과 같음)</p> <p>2. <u>제6조</u></p> <p><u>제2호</u></p> <p>3 ~ 4(현행과 같음)</p> |
|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
|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공주시 전지역 중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한다.</p> |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공주시 전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으로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p> |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공주시 전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으로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p> |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공주시 전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으로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p> |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공주시 전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으로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p> |
| <p>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p> | <p>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p> | <p>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p> | <p>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p> | <p>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p> |

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4. (생략)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화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다. (생략)

제8조(음식물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규정에 의한

법 제13조

제7조

1.

제10조제4호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1. ~ 2. (현행과 같음)

3.

각목의 어느 하나

가.~ 다.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 ⑤(생략)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공주시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4의 계산방식에 의해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운영주체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징수에 따른 수수료를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개별세대의 수수료부담은 해당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결정하도록 한다.

제68조제3항제3호

③ ~ ⑤(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제13조**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68조제1항제1호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6에 의하고,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윤을 징수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음식물류 수수료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생략)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4항 및 규칙 제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략)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재질 등

1. 규격

(단위 : mm)

| 구분 규격 | 폭 | 너비 | 높이 | 중량 (kg) | 두께 | 바퀴 |
|----------|-------------|-------------|-------------|------------|-------|------------|
| 120ℓ | 475~ 490 | 535~ 560 | 930~ 970 | 11±0.5 | 4±0.5 | 200× 2개 |

2. 재질

- 몸체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 바퀴 : 고무

3. 색상 : 회색, 녹색, 청색, 노랑색, 주황색등

4.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 부착
- 용기외부 양쪽측면에 부피 측정 눈금을 5밀리미터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kg의 내용물을 투입후 상차할 때 하

제11조의2(수수료납부필증의 무료제공)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납부필증을 무료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2. 화재 또는 자연재해 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2조(음식물류 수수료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현행과 같음)

②-----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제10조제4호-----

③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재질 등

| 구분 | 규격 (내부용량) | 구조 | 허용 오차 | 재질 |
|----------------|------------------------------|--|----------|--------------------|
| 전용 수거 용기 | 5ℓ (가정용)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5% | 프라스틱 (PE, HDPE) |
| | 25ℓ (음식점 등)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5% | 프라스틱 (PE, HDPE) |
| | 120ℓ (음식점 등 및 상하차용) | 용기하부에 바 퀴가 있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며 뚜껑 이 밀폐된 구조 | ±5% | 프라스틱 (PE, HDPE) |

- 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파손이 없어야 함.
- 용기전면에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함”·“공주시”란 문구 및 “시 로고 마크”와 “관리표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을 적절한 크기로 인쇄
 - 용기 뚜껑 상부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함 이용안내문”을 인쇄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5조 관련)

| 구 분 | 규 격 | 바탕색 | 기 능 |
|--------------------|------|----------------|-------------------------------|
| 단독주택 및 음식점 등 | 5ℓ | 150mm ×30mm | 노랑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
| | 25ℓ | ” | ” |
| | 120ℓ | ” | ” |

○ 특 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 부착
- 용기외부에 내부용기 용량(5, 25, 120ℓ)표기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kg의 내용물을 투입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파손이 없어야 함
- 용기전면에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함”·“공주시”란 문구 및 “시 로고마크”와 “관리표찰”·“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을 적절한 크기로 인쇄
- 용기 뚜껑상부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함 이용안내문”을 인쇄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등

1. 공동주택의 경우

- 가. 설치장소 : 단지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은 장소나 다수 주민이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 나. 설치수량 : 10세대당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기준.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 다. 관 리 : 공동주택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

2. 감량의무사업장 및 기타

- 가. 설치장소 : 당해 사업장 토지 및 건물내의 적당한 곳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 나. 설치수량 :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2일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등

| 구 분 | 공동주택의 경우 | 감량의무화 사업장 및 개인주택의 경우 |
|------|---|--|
| 설치장소 | 단지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은 장소나 다수 주민이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 당해 사업장 토지 및 건물내의 적당한 곳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
| 설치수량 | 30세대당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2일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
| 관 리 | 공동주택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 | 사업장 관리인, 통장 또는 이·반장 |

<신 설>

【별표 6】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단위: 원)

| 구 분 | 판매 단위 | 공급액 | 위탁 판매 수수료 (6%) | 소매 판매 수수료 (9%) | 판매 가격 |
|------------------------|----------|-------|-------------------------|-------------------------|----------|
| 단독주 택 및 음식점 등 | 5ℓ 1매 | 147 | 9 | 14 | 170 |
| | 25ℓ 1매 | 736 | 44 | 70 | 850 |
| | 120ℓ 1매 | 3,522 | 211 | 337 | 4,070 |

공동주택 수거수수료

(단위: 월/원)

| 구 분 | 세대당 총 부과금액 | 부과징수 및 관리비용(3%) | 수거비용 |
|------------|---------------|--------------------|--------|
| 100㎡ 이하 | 675 | 20.25 | 654.75 |
| 100㎡ 이상 | 843.75 | 25.31 | 818.44 |

공주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3.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725 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피해지원) ① (생략) ② (생략) 1. <u>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u> <u>의 경우</u> 2. 제5조에 의한 피해산정 총액이 <u>30만원</u> 미만인 경우</p> | <p>제3조(피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삭제> 2. ----- <u>10만원</u> -----</p> |

공주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3.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726 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전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를 “고지에 의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업무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공급원가의 6퍼센트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보관·판매사항 및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대금의 수납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업무수탁자의 사고 발생시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위약금 및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사항
4. 판매업무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0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 필증의 공급 및 판매)</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도·소매업자, 마을구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시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대금을 <u>사전에</u>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p> <p>③ ~ ⑥ (생략)</p> <p><u><신 설></u></p> | <p>제10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 필증의 공급 및 판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u>고지</u>에 의하여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u>제10조의2(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 필증의 판매업무 위탁)</u> ① 시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p> <p>1. 금융기관</p> <p>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p> <p>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공급원가의 6퍼센트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1. <u>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보관·판매사항 및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u></p> <p>2. <u>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대금의 수납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u></p> <p>3. <u>업무수탁자의 사고 발생시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위약금 및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사항</u></p> <p>5. <u>판매업무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p> |

공주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03. 31.)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 375 호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조의2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및 사퇴)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 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입후보등록을 완료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1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⑤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상임위원장 및 특

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임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문표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 <p>제8조의2(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및 사퇴)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p> <p>②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p> <p>③ 입후보등록을 완료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1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p> <p>⑤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p>〈신 설〉</p> | <p>제12조의2(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① 의장 또는 부의장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임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p> |

공주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 376 호

공주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 ①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1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登記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 ①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 및 제50호의3서식의 비과세·감면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의4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0호의5서식의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의6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3(대장정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 ② 시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0조의3(대장 정리)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

제140조의4부터 제14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0조의4(비과세 및 감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 별지 제50호의7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140조의5(신고 및 납부처리) ①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의8서식부터 제50호의11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거나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0호의13서식부터 제50호의16서식까지의 과세 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의6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의6(특별징수) ①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만 해당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특별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지방소득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의3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한다.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3조의3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의3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징수 한다.

나.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3조의3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징수 한다.

$$\begin{aligned}
 & - \text{소득금액} \times \text{제한세율} = \text{산출세액} \\
 &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times \text{지방소득세 세율}}{[\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 (\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times \text{지방소득세 세율})]} \\
 & = \text{지방소득세}
 \end{aligned}$$

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50호의12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확인 하여야 한다.

제140조의7(보통징수) ①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50호의13부터 제50호의16까지 서식의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79조의9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40조의8(대장 정리) ① 시장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절 농업소득세(제153조부터 제162조까지) 및 제10절 사업소세(제173조부터 제17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50호의2, 50호의3, 50호의4, 50호의5, 50호의6, 50호의7, 50호의8, 50호의9, 50호의10, 50호의11, 50호의12, 50호의13, 50호의14, 50호의15, 50호의1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64호서식부터 제66호서식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종전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되,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에 관한 서식은 각각 주민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으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에 관한 서식은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장 각론 | 제8장 각론 |
| 제1절 주민세 | 제1절 주민세 |
| <p>제137조(균등할 주민세) ①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균등할, 법인균등할로 구분하여 과세한다.</p> <p>② 개인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 경우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납세의무가 없다.</p> <p>③ 개인사업자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자로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p> | <p>제137조(균등분 주민세) ①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p> <p>②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p> <p>③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제1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p> |

④ 법인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140조(비과세 및 감면)①주민세를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 조건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법 제26조 납기전 징수사유 및 부과제척 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신 설>

④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140조(비과세 및 감면) ①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 및 제50호의3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 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0조의2(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의4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0호의5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의6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0조의3(대장정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

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
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
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
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
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 된 때

② 시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
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
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140조의4(비과세 및 감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 별지 제50
호의7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
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 을 발견한 경
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

<신 설>

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40조의5(신고 및 납부처리) ①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의8서식부터 제50호의11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거나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0호의13서식부터 제50호의16서식까지의 과세 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의6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의6(특별징수) ①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만 해당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특별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지방소득

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의3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다.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 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3조의3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의3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징수한다.

나.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 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3조의3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

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징수한다.

$$\begin{aligned} & - \text{소득금액} \times \text{제한세율} = \text{산출세액} \\ &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times \text{지방소득세 세율}}{[\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 (\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times \text{지방소득세 세율})]} \\ & = \text{지방소득세} \end{aligned}$$

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50호의12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0조의7(보통징수) ①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50호의13부터 제50호의16까지 서식의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79조의9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 설>

제140조의8(대장 정리) ① 시장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제5절 농업소득세

제153조(대장 비치) 농업소득세
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89호
서식의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
으로 구분하여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54조(소득금액) 시행규칙 별
지 제82호 서식 및 제83호서식
에 의하여 농업소득자별, 필지
별 식재면적, 작황, 수확량 등 소
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
155조(수입금액 열람공고) 수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
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
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
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
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
다.

<삭 제>

<삭 제>

<삭 제>

입금액 등의 공람장소와기간을
공람게시일 5일전까지 별지 제
6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6조(농업소득조사위원추천
및 위촉) 농업소득조사위원은
영 제15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지역별 추천위원은 영 제158
중에 해당하는자를 읍·면·동
장이 적임자를 추천에 의한다.

2.지역추천위원이 아닌자는 영
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자로 관계기관의 추천에
의한다.

제157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구
성)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위원
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
성한다.

제158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운영지원)①농업소득조사위원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
계공무원들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공무원은 자료제출

<삭 제>

<삭 제>

<삭 제>

등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조사의 정확을 기하여 읍·면·동 지역별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농업소득 조사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9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는 별지제65호서식에 의한다.

<삭 제>

제160(소득금액 통보 및 접수)

<삭 제>

① 세무공무원은 다른 시·군·군에 주소를 둔 자가 소유하는 관내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자의 주소지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다른 시장·군수·로부터 농업소득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산출하여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1조(재해지 조사결정)세무공
무원은 재해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
급별 기준 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조서식의
작황개황조사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2조(농업소득실태조사등)
세무공무원은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 작물에 대하여 필지별,작
물명,식재면적,작황,수확량 등
기타 필요한 상황을 현지조사
하여 별지 제83조서식의 실태
조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
다.

<삭 제>

제10절 사업소세

<삭 제>

제173조(신고납부)①법 제2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 신
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 및 제74조서
식에 의한 사업소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
다.

<삭 제>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식
고 및 납부한 사업소세 수납내

역을 통보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5호서식 또는 별지 제76조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신고 및 납부기한내에 사업소세 신고 및 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조서식에 의한 수정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4조(보통징수)①과세자료를 통보받거나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별지 제76조서식 또는 제77조서식에 의한 사업소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사업소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자를 있는 경우에는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통징수한다. 다만,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삭 제>

는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75조(대장정리) ①시행규칙 <삭 제>

제100호서식에 의한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
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
내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 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9.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 된 때

②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 대장
등에 대하여 사업소용 건축물
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사
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6조(종업원의 급여총액 조
사) 부과부서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
급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
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7조(비과세 및 감면)①사업
소세를 비과세·면제 및 감면
한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제79호서식에 의거 사업
소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
성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이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삭 제>

②사후관리기간이 1년 이상인 경
우에는 6월마다 납세자가 비과
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과세·
감면처리부에 기재 하여야 한
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종료 1
개월전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
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③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소세를 보통징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법제26조의 납기전징수 사유
및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
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
략한다.

(별지 제50호의3 서식)

주민세 재산분 비과세 · 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 접수 번호 | 토지 면적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 상호 전화 번호 | 납세자 주소 | 건물면적 | 비과세 감면액 | 사 후 관 리 내 용 | | | | | | | | 결 제 | | | | | | | | | |
|----------|----------|-------------------------------|--------------------|--------|------|------------|----------------|----------------|----------------|-----------------|----------|-----------------|-----------------|-----|-----|-----|-----|-----|--|--|--|--|--|--|
| | | | | | | | 1차 확인 내용 | 4차 확인 내용 | 7차 확인 내용 | 10차 확인 내용 | 확인 내용 | 11차 확인 내용 | 12차 확인 내용 | 담당자 | 담당 | 과장 | | | | | | | | |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10차 | 11차 | 12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 × 210mm(미 색모조 80g/m²)

(별지 제50호의8 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 납세번호 | 납부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성명 | 전 화 번 호 | 총 과세표준 | 안분율 | 지방소득세 | 합계세액 | 수납금액 |
|--------|---------|---------|------|---------|-----------|--------|-----|-------|-------|------|
| 주 | 소 | 소 | 부과일자 | 사 업 기 간 | 총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가산세 | 납기일자 | 수 납 일 | |
| 법인등록번호 | 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수 : 건 | 지방소득세 : | 가산세: | 합 계 : | 수납금액 합계 : | | | | | |

364mm×257mm(미 색모조 80g/m²)

(별지 제50호의10 서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동(읍·면))

○○연도 ○○월분

| 일련번호 | 납세번호 | 납부구분 | 성명(법인명) | 전화번호 | 귀속연도 |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 | 가산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수납금액 | 수납일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신고지 주소 | | | 고지 주소지 | 납기일 | 자료구분 | 비 고 | | | | |
| | | | 양 도 물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수 : | 건 | 지방소득세 : | 가산세: | 합 계 : | 수납금액 | 합계 : | | | | | |

364mm×257mm(미 색모조 80g/m²)

(별지 제50호의11 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 접수 일자 | 신고 일자 | 납 세 의 무 자 | | | 종업원 수 | 급여총액 | 세율 | 산출세액 | 가산세 | 납부세액 | 납부일자 | 결 제 | | |
|----------|----------|-------------|----------------|----|-------|------|----|------|-----|------|------|-----|----|----|
| | | 성명 (법인명) | 주민(법인) 등록번호 | 주소 | | | | | | | | 담당자 | 담당 | 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미 색모조 80g/m²)

(별지 제50호의12 서식)

| 일련번호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 | 기관명(사업장명) | | | | | | | | 보통징수분 | | | | | | | | 결재 | | | | | |
| 월별 | 납부 일자 | 근로소득 | | | | 이자소득 | | | | 기타(배당)소득 | | | | 보통징수분 | | | | 담당자 | 과장 | | | | |
| | | 인원 | 과세 표준 | 지방 소득세 | 증감 | 인원 | 과세 표준 | 지방 소득세 | 증감 | 인원 | 과세 표준 | 지방 소득세 | 증감 | 조사 월일 | 과세 표준 | 방 지 소 득 세 | 가산세 | | | 합계 | 결정 일자 | 납부 일자 | |
| 이월 | | | | | | | | | | | | | | | | | | | | | | | |
| 1월 | | | | | | | | | | | | | | | | | | | | | | | |
| 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3월 | | | | | | | | | | | | | | | | | | | | | | | |
| 4월 | | | | | | | | | | | | | | | | | | | | | | | |
| 5월 | | | | | | | | | | | | | | | | | | | | | | | |
| 6월 | | | | | | | | | | | | | | | | | | | | | | | |
| 7월 | | | | | | | | | | | | | | | | | | | | | | | |
| 8월 | | | | | | | | | | | | | | | | | | | | | | | |
| 9월 | | | | | | | | | | | | | | | | | | | | | | | |
| 10월 | | | | | | | | | | | | | | | | | | | | | | | |
| 11월 | | | | | | | | | | | | | | | | | | | | | | | |
|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 상여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 × 210mm(미 색모조 80g/m²)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0년 4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 377 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4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 중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를 “지급명령은 제64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거나 지출원이” 로 한다.

제5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64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출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할 경우 회계 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제7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 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산출력물로 갈음한다.

제109조, 제110조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소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세입세출금의 월계표와 제2항의 세출금의 월계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
| | <p><u>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출원의 지급명령</u> <u>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u> <u>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u> <u>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u> <u>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u> <p><u>② 시금고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u></p> <p><u>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할 경우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u> <u>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 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u> <u>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u>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② (생략)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의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같음한다.</u></p> | <p>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u>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 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산출력물로 같음한다.</u></p> |
| <p>제109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1조 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명령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u>〈신설〉</u></p> | <p>제109조(지급의 증명)----- ----- ----- ----- ----- ----- <u>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u></p> |
| <p>제110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u>〈신설〉</u></p> | <p>제110조(송금지급절차)----- ----- ----- ----- ----- ----- ----- <u>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u></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16조(세입세출 일계표)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소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p> |
| <p>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p> <p>① ~ ② (생략)</p> <p><u>〈신설〉</u></p> | <p>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제1항의 세입세출금의 월계표와 제2항의 세출금의 월계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p> |
| <p>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p> <p>① (생략)</p> <p>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신설〉</u></p> | <p>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p> |

공주시 고시 제 2010-2호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제 2조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0. 4. .

공주시장

가. 문화재 지정

(1) 문화재명 : 송학리 마애여래좌상

- 종 별 : 유형문화재 35호
- 신청인 : 공주시장
- 소재지 :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산 70-1번지
- 지정수량 : 마애불 1기
- 소유자 : 공주시
- 지정사유
 - 불상양식과 조각수법 등을 고려할 때 조성연대가 고려시대 후반 경으로 추정되는 마애불로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 공주지역에서는 몇 체 되지 않는 고려시대의 우수한 마애불로 평가할 수 있어 공주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자 함

(2) 문화재명 : 류충걸 묘소 및 신도비

- 종 별 : 기념물 26호
- 신청인 : 진주류씨 금사공종회

- 소재지 :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산 1번지
- 지정수량 : 묘소 1개소 및 신도비 1기
- 소유자 : 진주류씨 금사공종회
- 지정사유
 - 묘역은 공주지역에 세거한 진주류씨의 문중묘역으로 류충걸, 류진항, 류성서 등 크게 3개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가장 원상을 유지하고 있고 가장 오래된 묘소인 류충걸 묘소 및 신도비는 공주시 향토문화유적의 역사상·학술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공주지역의 조선시대 묘제를 연구하는 필요한 자료로 판단되어 공주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자 함

(3) 문화재명 : 서기 묘소 및 신도비

- 종 별 : 기념물 27호
- 신청인 : 공주시장
- 소재지 :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산 10-1번지
- 지정수량 : 묘소 1개소 및 신도비 1기
- 소유자 : 이천서씨문목공고청파대종회
- 지정사유
 - 고청 서기 선생은 호서지역의 대표적 유학자로서 관직에 진출하지 않고 오로지 강학활동에 전념한 인물로 조선시대의 사상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 묘갈 및 신도비 등이 갖추어져 있어 보존환경도 매우 양호하여 조선시대의 충청지역 묘제의 이해에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바 공주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자 함

(4) 문화재명 : 윤증 묘소

- 종 별 : 기념물 28호
- 신청인 : 공주시장

- 소재지 :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11-11번지
- 지정수량 : 묘소 1개소 및 신도비 1기
- 소유자 : 파평윤씨문성공파종증
- 지정사유
 - 윤증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산림세력으로 송시열 등과 학문적·정치적 비중이 매우 높아 노론의 영수로 추대된 인물로 역사적으로도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관련 유적·유물이 국가 및 도 문화재로 지정·보호되고 있어
 - 윤증 묘소도 공주를 상징하는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주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자 함

(5) 문화재명 : 석송3·1만세유적지

- 종 별 : 기념물 29호
- 신청인 : 공주시장
- 소재지 : 공주시 정안면 석송리 33-2번지
- 지정수량 : 만세유적지
- 소유자 : 이증묵(석송만세운동기념보존사업회)
- 지정사유
 - 일제강점기 공주지역은 도청소재지로 헌병대 본부의 주재지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애로점과 더불어 탄압이 심하였음을 고려할 때 석송만세운동의 의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 공주지역의 유일한 독립운동 사적지로서 가지는 가치가 매우 높으며, 후세의 교육장으로서의 활용성도 높다고 판단되어 공주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자 함

나. 연락처

(1) 공주시 문화재관리소(문화재보호담당)

- 주소 : 충남 공주시 응진동 57
- 연락처 : 전화 041) 840-2814, Fax 041) 840-2810
- 전자메일 : paekche@korea.kr

공주 정안 1 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안 1 농공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기업유치과 (041-840-23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04월 07일

공 주 시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 정안 1 농공단지 (변경 없음)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산47-1번지 일원
 - 나. 면 적 : 151,835㎡(기정: 158,184㎡, 감소: 6,349㎡)
3. 농공단지의 지정(변경)목적
 - 국도 23호선(정안~행정)개설(1995~1998년)로 인하여 변경된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 공주 정안 2 농공단지 진입도로계획에 따른 가로망계획 변경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 시행자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342
 - 사업 시행자 : 공주시장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2010. 3 ~ 2010. 12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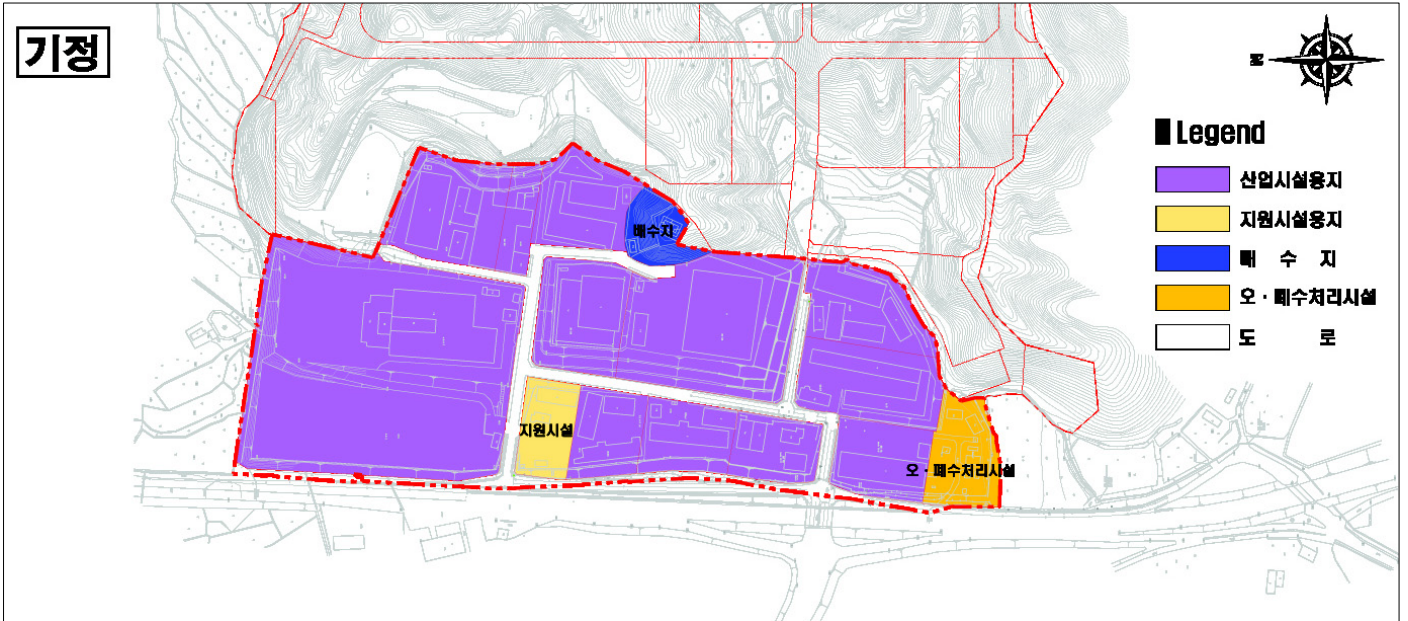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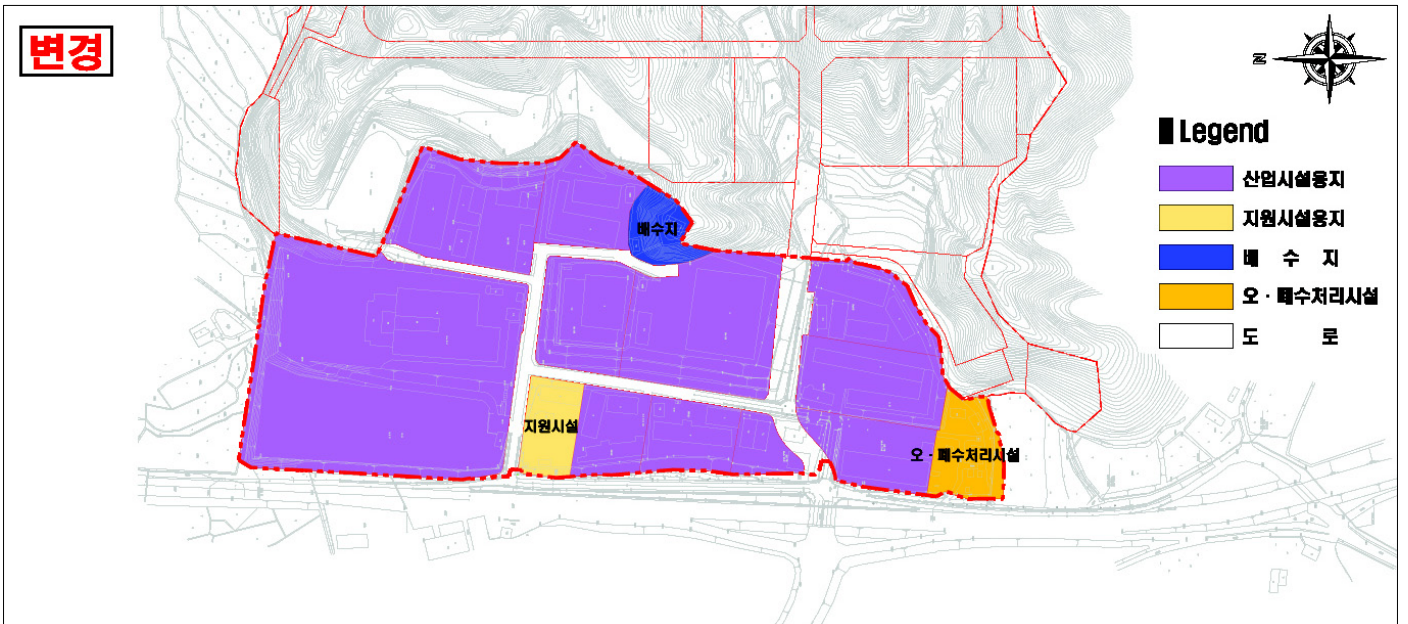
< 토지이용(변경)계획표 >

| 구 분 | 면 적(㎡) | | | 구성비(%) | | 비고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
| 합계 | 158,184 | ▼ 6,349 | 151,835 | 100.00 | 100.00 | |
| 산업시설용지 | 128,897 | ▼ 3,733 | 125,164 | 81.49 | 82.43 | |
| 지원시설용지 | 4,307 | ▼ 26 | 4,281 | 2.72 | 2.82 | |
| 배수지 | 3,389 | - | 3,389 | 2.14 | 2.23 | |
| 오·폐수처리장 | 5,883 | ▼ 540 | 5,343 | 3.72 | 3.52 | |
| 도로 | 15,708 | ▼ 2,050 | 13,658 | 9.93 | 9.00 | |

< 토지이용계획(안)도_기정 >



< 토지이용계획(안)도_변경 >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계획

◦ 도로 총괄표

| 유별 | 합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5 | 845 | 14,132 | - | - | - | - | - | - | - | - | - |
| 중로 | 3 | 640 | 11,372 | 1 | 221 (18) | 5,839 (474) | 1 | 209 | 3,096 | 1 | 210 | 2,437 |
| 소로 | 2 | 205 | 2,760 | 1 | 64 | 1,378 | 1 | 141 | 1,382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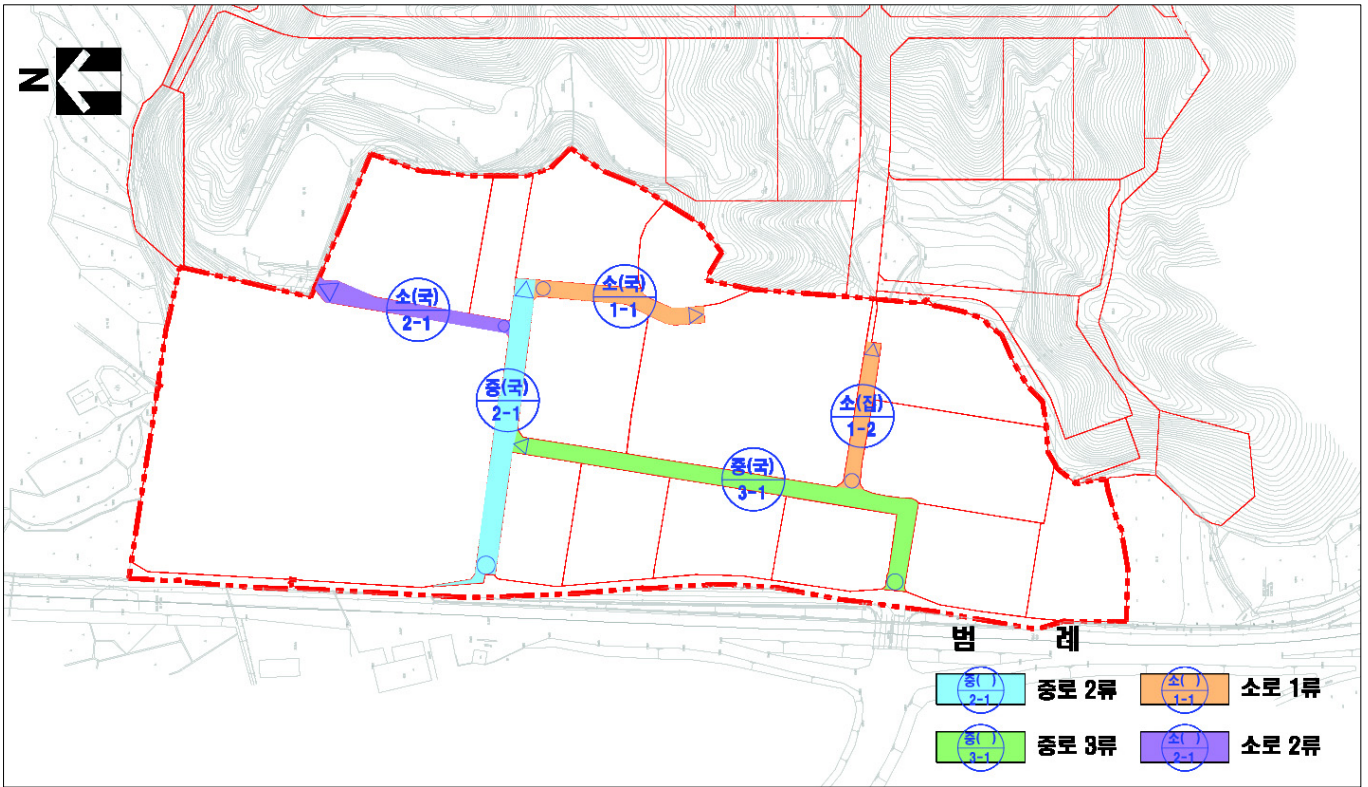
주) ()는 단지의 연장 및 면적

◦ 도로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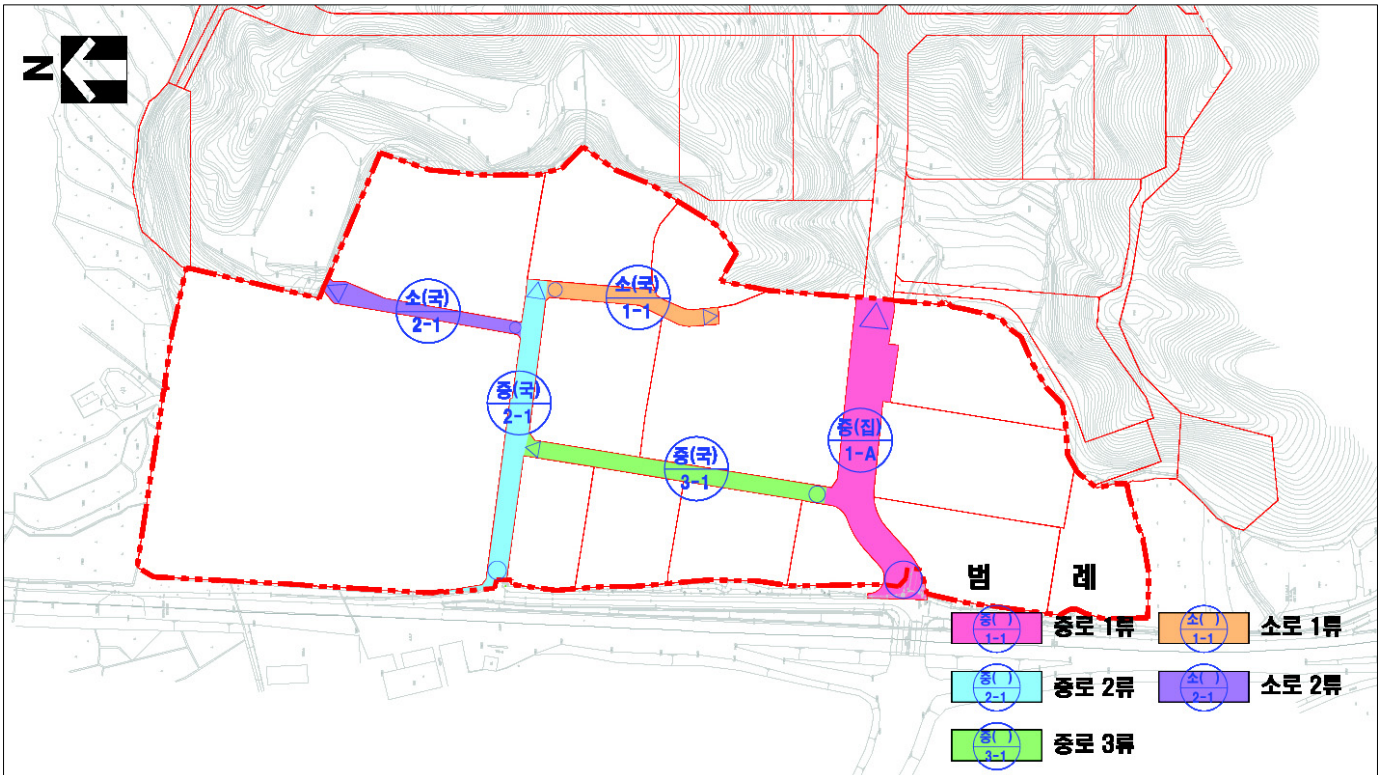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신설 | 중로 | 1 | A | 21 | 집산도로 | 221 (18) | 313-1도 | 320-9도 | 일반 도로 | 농공단지내 | | |
| 기정 | 중로 | 2 | 1 | 15 | 국지도로 | 209 | 308-6도 | 소로1-1 | 일반 도로 | 농공단지내 | | |
| 기정 | 중로 | 3 | 1 | 12 | 국지도로 | 338 | 313-1도 | 중로2-1 | 일반 도로 | 농공단지내 | | |
| 변경 | 중로 | 3 | 1 | 12 | 국지도로 | 210 | 중로1-A | 중로2-1 | 일반 도로 | 농공단지내 | | |
| 기정 | 소로 | 1 | 1 | 11 | 국지도로 | 64 | 중로2-1 | 320-6도 | 일반 도로 | 농공단지내 | | |
| 기정 | 소로 | 2 | 1 | 9 | 국지도로 | 141 | 중로2-1 | 298-11도 | 일반 도로 | 농공단지내 | | |
| 폐지 | 소로 | 1 | 2 | 11 | 국지도로 | 104 | 중로3-1 | 320-9도 | 일반 도로 | 농공단지내 | | |

주) ()는 단지의 연장

< 가로망계획(안)도_기정 >



< 가로망계획(안)도_변경 >



8.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 총괄표

| 구분 | 계 | | | 사유지 | | 국유지 | | 공유지 | |
|-----|-----|---------|-------|-----|---------|-----|-------|-----|--------|
| | 필지수 | 면적(㎡) | 비율(%)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 합 계 | 40 | 151,835 | 100.0 | 11 | 127,891 | - | - | 29 | 23,944 |
| 장 | 17 | 140,904 | 92.8 | 11 | 127,891 | - | - | 29 | 23,944 |
| 도 | 23 | 10,931 | 7.2 | - | - | - | - | - | - |

나. 세부토지조서

|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1 | 사현리 | 303 | 장 | 6,848 | 6,848 | 303 | 동신프라스틱 주식회사 | |
| 2 | 사현리 | 298-10 | 장 | 12,086 | 12,086 | 서울 금천구 가산동 692 | 주식회사 한진피앤씨 | |
| 3 | 사현리 | 298-11 | 도 | 857 | 857 | 공 | 공주시 | |
| 4 | 사현리 | 298-2 | 장 | 46,893 | 46,893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4 | 근화제약 주식회사 | |
| 5 | 사현리 | 298-9 | 도 | 110 | 110 | 공 | 공주시 | |
| 6 | 사현리 | 302-1 | 도 | 325 | 325 | 공 | 공주시 | |
| 7 | 사현리 | 302-3 | 도 | 256 | 256 | 공 | 공주시 | |
| 8 | 사현리 | 303-1 | 도 | 267 | 267 | 공 | 공주시 | |
| 9 | 사현리 | 304-10 | 장 | 3,026 | 3,026 | 공 | 공주시 | |
| 10 | 사현리 | 304-11 | 도 | 710 | 710 | 공 | 공주시 | |
| 11 | 사현리 | 304-14 | 도 | 1,816 | 1,816 | 공 | 공주시 | |
| 12 | 사현리 | 304-18 | 장 | 18,479 | 18,479 | 서울 금천구 가산동 692 | 주식회사 한진피앤씨 | |
| 13 | 사현리 | 304-4 | 도 | 6 | 6 | 공 | 공주시 | |
| 14 | 사현리 | 304-6 | 도 | 915 | 915 | 공 | 공주시 | |
| 15 | 사현리 | 305-1 | 도 | 568 | 568 | 공 | 공주시 | |
| 16 | 사현리 | 305-2 | 장 | 8,061 | 8,061 | 서울 금천구 가산동 692 | 주식회사 한진피앤씨 | |
| 17 | 사현리 | 308-12 | 장 | 1,095 | 1,095 | 공 | 공주시 | |
| 18 | 사현리 | 308-6 | 도 | 346 | 346 | 공 | 공주시 | |
| 19 | 사현리 | 308-7 | 장 | 3,186 | 3,186 | 공 | 공주시 | |
| 20 | 사현리 | 309-2 | 도 | 32 | 32 | 공 | 공주시 | |

|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면 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21 | 사현리 | 309-4 | 장 | 4,895 | 4,895 | 서울 구로구 오류동 75-2 | 주식회사 신성강건 | |
| 22 | 사현리 | 310-1 | 도 | 47 | 47 | 공 | 공주시 | |
| 23 | 사현리 | 310-11 | 도 | 123 | 123 | 공 | 공주시 | |
| 24 | 사현리 | 310-12 | 장 | 5,303 | 5,303 | 화성군 동탄면 송리 457 | 주식회사 수산서비스 | |
| 25 | 사현리 | 310-4 | 도 | 614 | 614 | 공 | 공주시 | |
| 26 | 사현리 | 310-7 | 도 | 722 | 722 | 공 | 공주시 | |
| 27 | 사현리 | 310-8 | 장 | 5,250 | 5,250 | 310-8 | 주식회사 뉴올 | |
| 28 | 사현리 | 311-5 | 도 | 185 | 185 | 공 | 공주시 | |
| 29 | 사현리 | 312-3 | 장 | 4,169 | 4,169 | 화성군 동탄면 송리 457 | 주식회사 수산서비스 | |
| 30 | 사현리 | 320-4 | 장 | 7,271 | 7,271 | 320-4 | 고주현 | |
| 31 | 사현리 | 320-5 | 장 | 363 | 363 | 공 | 공주시 | |
| 32 | 사현리 | 320-6 | 도 | 53 | 53 | 공 | 공주시 | |
| 33 | 사현리 | 320-9 | 도 | 47 | 47 | 공 | 공주시 | |
| 34 | 사현리 | 321-13 | 도 | 91 | 91 | 공 | 공주시 | |
| 35 | 사현리 | 321-15 | 도 | 13 | 13 | 공 | 공주시 | |
| 36 | 사현리 | 321-4 | 도 | 848 | 848 | 공 | 공주시 | |
| 37 | 사현리 | 321-7 | 도 | 1,980 | 1,980 | 공 | 공주시 | |
| 38 | 사현리 | 321-9 | 장 | 8,636 | 8,636 | 화성군 동탄면 송리 457 | 주식회사 수산서비스 | |
| 39 | 사현리 | 322-12 | 장 | 3,429 | 3,429 | 공 | 공주시 | |
| 40 | 사현리 | 322-15 | 장 | 1,914 | 1,914 | 공 | 공주시 | |
| 합 계 | | | | 151,835 | 151,835 | | | |

공주시 고시 제 2010 - 5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2조 제3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4. .

공 주 시 장

공주시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가스시설 검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위탁업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 위탁하는 가스시설 검사업무는 【별표1】 과 같으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는 【별표2】 와 같다.

제3조(권한 위탁기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 검사권한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 공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제4조(검사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위탁받은 기관은 권한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권한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권한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탁받은 기관에 있다.

④위탁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위탁받은 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권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상황을 제출받거나 감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스관계 법령과 지식경제부 고시 및 지침 등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검사신청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위탁하는 가스시설 검사의 업무범위

| 구 분 | 위탁기관 | 위 탁 업 무 |
|----------------------------|----------------------------------|--|
| 고 압 가 스 안전관리법 | 한국가스 안전공사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4호 -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 | 한국가스 안전공사 · 공인검사 기 관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 - 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 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 | 공인검사 기 관 · 전문검사 기 관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 -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 법 | 한국가스 안전공사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설의 정기검사 |
| 도시가스 사 업 법 | 한국가스 안전공사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별표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 검사기간 | 지 역 | 시설수 |
|-------|---|-------|
| 계 | | 856개소 |
| 1/4분기 | 유구읍, 의당면, 이인면, 탄천면, 금성동, 교동, 계룡면 | 191개소 |
| 2/4분기 | 반포면, 사곡면, 산성동, 상왕동, 소학동 | 216개소 |
| 3/4분기 | 검상동, 금학동, 금홍동, 무릉동, 반죽동, 봉정동, 봉황동, 신기동, 신평면, 오곡동, 신관동 | 243개소 |
| 4/4분기 | 옥룡동, 우성면, 웅진동, 월송동, 장기면, 정안면, 주미동, 중동, 중학동, 태봉동 | 206개소 |
| 기타사항 | 년2회 검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은 1/4분기내 1회, 3/4분기내 1회, 검사를 받도록 함. | |

공주시공고 제 2010-448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4 월 15 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제도 개선사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사항을 인사규칙에 반영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그 동안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1. 인사위원회 운영방법 변경(안 제3조제2항)

- 회의록 서명 : 위원장, 간사 서명 → 위원장, 위촉위원 1명이상 서명
- 서면심의 안건 명시 : 근속·우대승진, 명예퇴직수당지급 등

2.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 단서신설)

- 응시의사 철회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
- 환급 절차 및 방법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명시

3. 정보화자격증 가산점비율 축소조정(안 제13조제1항, 제2항)

- 가산점 비율축소(0.5% ~ 3% → 0.5% ~ 1%) 및 폐지(워드2급 등 3종)

4. 특별승진 대상자 구체화(안 제27조)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승진 대상을 구체화
- 국정·시책과제 추진, 격무기피 업무, 주민수요 급증 업무 추진 등에 기여한 공무원

5.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전보우대(안 제33조 신설)

- 격무기피업무 2년이상 근무자는 전보시 본인 희망부서 우선고려

6. 우수 기능인재 특별채용요건 추가(안 별표5)

- 기능명장 및 국제기능올림픽 등 입상자의 기능직(6~10급)특별채용 기준 신설을 통한 기능인재에 대한 우대시행

7.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반영(안 별표5, 5의2, 7, 7의4, 8, 15)

- 신설 : (기능직)기후환경 및 조리직렬, (일반직)시설직렬의 디자인직류
- 명칭변경(기능직) : 교환직렬 → 전화상담직렬, 난방직렬 → 열관리직렬, 선박직렬 → 선박항해직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319번지) - 우편번호 : 314 - 702

- 전 화 : 041) 840 - 2233 -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간사가”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3.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4.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3조의2 다음에 “제2장 시험”을 삽입한다.

제5조 본문 중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을 “신문·방송”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연구원”을 “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응시결격상”을 “응시결격사유”로,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최종시험예정일”로 한다.

제10조 본문 단서 중 “각호의 1의 경우에는는 해당”을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검정하고”를 “별지 제11호에 의거 검정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및”을 “기타”로, 같은 조 제4항 중 “대한 그출신학교”를 “관한 출신학교”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3퍼센트”를 “1퍼센트”로, “2이상의”를 “2개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2이상의”를 “2개 이상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표5와”를 “별표5, 별표5의2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을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같은 항 단서 중 “담당직무의”를 “당해 직무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별표3, 별표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별표3, 별표9에서 규정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 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기능직기능6급·기능7급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기능직기능7급·기능8급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기능직 기능9급 이하 |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별표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사역직류의”를 “사역직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을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의 규정에”를 “제12조 및 별표 제10의 규정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직시험이 면제되는”을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면제되는’을 ”면제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19조 다음에 “제3장 임용”을 삽입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역별”을 “근무희망 지역별”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5급에의”를 “5급공무원에의”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3,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8,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1항 및 별표7의2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 구분 | 구비서류의 종류 | 비 고 |
|----|-----------------------------|---|
| 1 | <u>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u> | 시·구, 읍·면·동장 발행 |
| 2 | 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에 한함 |
| 3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 4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
| 5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
| 6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
| 7 |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별표 3]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9조 및 제15조제5항 관련)

| 직렬 | 계급 | | 지 도 관 | 지 도 사 |
|------|-------|--|---|--|
| | 직류 | | | |
| 농촌지도 | 전 직 류 |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생활지도 | 생 활 |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어촌지도 | 어 촌 | |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비 고 : 1. 윗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윗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 기술사 |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 기사(3년), 산업기사(6년) | 기사, 산업기사(3년) | 산업기사 |

2. 기능직공무원

| 임용예정 계 급 | 기능 5급 | 기능 6급 | 기능 7급 | 기능 8급 | 기능 9급 | 기능 10급 |
|----------------------|-----------------------------------|--|---|--|-----------------------------|-----------------------------|
|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기 능명장(6년) | 기사(2년), 산업 기사(4년), <u>기능 명장(2년)</u> | 기사, 산업기사 (2년), 기능사(4 년), <u>기능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2년)</u> | 산업기사, 기능 사(2년), <u>국제기 능올림픽 입상 자, 전국기능대 회 입상자(2년)</u> | 기능사, <u>전국기 능대회 입상자</u> | 기능사, <u>지방기능 경기 입상자</u> |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5급특별임용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장령법」에 따른 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행 정 | 운 수 | 산업기사 : 철도운송 |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 | 농업기계 |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 | 기계운전 | 기 술 사 : 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
| | 조 선 |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 | 일반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전 자 |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p> |
| | 원 자 력 |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
| | 금 속 |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
| | 야 금 |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
| | 섬 유 | <p>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
| | 일반화공 |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
| 자 원 |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p> <p>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p> | |
| 농 업 | 일반농업 |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p> |
| | 잠 업 | <p>기사 : 생물공학</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
| | 농 화 학 | <p>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식물검역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임업종묘, 유기농업 |
| | 축 산 |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
| | 생명유전 |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
| 녹 지 | 조 경 |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
| | 산림자원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 | 산림보호 |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 | 산림이용 |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
| | 일반수산 |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 | 수산제조 |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
| | 수산물검사 |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
| | 수산증식 |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어 로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 수산양식 ,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일반선박 | 기 술 사 :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 | 선박항해 |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 | 선박기관 | 기 술 사 :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 | 해양교통 시 설 |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산림 기 능 장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기 사 :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수 질 |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능 장 : 산림</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
| | 대 기 |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능 장 : 산림</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
| | 폐 기 물 |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능 장 : 산림</p> <p>기 사 : 화공, 원자력, <u>에너지관리</u>,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u>에너지관리</u>,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
| 항 공 | 일반항공 | <p>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p>기 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
| | 정 비 | |
| 시 설 | 도시계획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
| | 일반토목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
| | 농업토목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
| | 건 축 |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지 적 |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측 지 | |
| | 교통시설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
| | 도시교통 시설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디자인 |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
| 통 신 | 통신사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 | 통신기술 |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 산업기사 : 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전송기술 | |
| | 전자통신 기술 | |
|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단, 기능직 공무원 중 신설된 기후환경 직렬의 자격증은 기사(대기환경), 산업 기사(대기환경), 기능사(환경)로 한다. |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 직렬 | 계급 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 행정 | 일반행정 법무행정 | 변호사, 변리사(4) | 변리사 | |
| | 재경 국제통상 |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 감정평가사 | | |
| | 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0) |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6) |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3) | 직업상담사(2)급 직업상담사(3)급 | 직업상담사(2)급 |
| | 문화홍보 | 변호사 | | | | |
| |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 감정평가사 세무사 | | |
| | 운수 | |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9) |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사(3)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
| | 감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 세무사 감정평가사 | | |
| 세무 | 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 세무사 | |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변호사 | | | | |

| 직렬 | 계급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직렬 | 직류 | |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 사회복지사 1급(3)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전 산 | 전 산 | 전 산 |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
| 사 서 | 사 서 | 사 서 | 1급 정사서(5)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 2급 정사서(3)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공 업 | 원 자 력 | 원 자 력 |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 | |
| 농 업 | 축 산 | 축 산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가족인공수정사 | |
| 수 의 | 수 의 | 수 의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수산질병관리사(7) | 수산질병관리사(7) | 수산질병관리사(3) | 수산질병관리사 | | |
| | 일반선박 |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급 항해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
| | 선박기관 | 1급 기관사(3) |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
| 보 건 | 보 건 | 보 건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 조산사 간호사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위생사(12) 영양사(12) | 위생사(8) 영양사(8) | 위생사(5) 영양사(5) | 위생사(2) 영양사(2) | 위생사 영양사 |

| 직렬 | 계급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직렬 | 직류 | | | | |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 의 무 | 일반의무 | | 의사(2) 한의사(2) | | | | |
| | 치 무 | | 치과의사(2) | | | | |
| 약 무 | 약 무 | | 약사(7) 한약사(7) | 약사(3) 한약사(3) | 약사 한약사 | | |
| | 약 제 | | | | | | |
| 간 호 | 간 호 | | 조산사(12) 간호사(12) | 조산사(6) 간호사(6) | 조산사(3) 간호사(3) | 조산사 간호사 | |
| 환 경 | 일반환경 | |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 수의사 약사 위생사(5) | 위생사(2) | 위생사 |
| | 수 질 | | | | | | |
| | 대 기 | | | | | | |
| | 폐 기 물 | | | | | | |
| 항 공 | 일반항공 |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
| | 조 종 |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 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3) | 자가용조종사 | |
| | 정 비 | |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
| 시 설 | 건 축 | | 건축사(5) | 건축사 | | | |
| | 디 자 인 | | 건축사(5) | 건축사 | | | |

비 고 :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 직렬 | 계급 |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10급 |
|-------------|-------------|----|---|---|---|---|
| | 직류 | 직류 | | | | |
| 전 기 | 전 기 | | | 무대조명전문인1급 | 무대조명전문인2급 | 무대조명전문인3급 |
| 기 계 | 기 계 | | |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
| 운 전 | 운 전 | | | | |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 <u>선박항해</u> | <u>선박항해</u> |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
| 선박기관 | 선박기관 | |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
| 보 건 | 보 건 | |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 |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간호사(5) 조산사(5) | 간호사(2) 조산사(2) | 간호사 조산사 | 간호조무사 |
| 위 생 | 위 생 | | 위생사(5) 영양사(5) | 위생사(2) 영양사(2) | 위생사 영양사 | |
| | 사 역 | | 영양사(5) | 영양사(2) | 영양사 조리사 1급(3) |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 오물처리사 2급(2) |
| <u>조 리</u> | <u>조 리</u> | | | <u>조리사 1급(4)</u> | <u>조리사 1급(2)</u> | <u>조리사 1급</u> <u>조리사 2급(2)</u> |
| 사무보조 | 위 드 | | |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 | 필 기 | | | |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 한글속기 2·3급 영문속기 2·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 | 계 리 | | | | 주산 1급이상 부기 1급 | 주산 2·3급 부기 2급 |
| | 사 서 | | 2급 정사서(3)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비 고 : 1.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직렬 | 직류 | | | |
| 행정 | 운수 | | | 산업기사(열차조작),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전산 | 전산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서 | 사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공업 | 일반기계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 | 기계운전 | 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

| 계급 | | 5급 이상 | 6·7급 | 8·9급 |
|--------|----------|---|--|---|
| 직렬 | 직류 | | | |
| 공 업 | 기계운전 |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 | 일반전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
| | 전자 |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작용, 품질관리) |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작용, 품질경영) | 산업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
| | 원자력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 기사(원자력, 열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 |
| | 금속 야금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 섬유 | 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 산업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
| | 일반화공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업 | 직류 | | | |
| 공업 | 가스 | 기술사(화공안전) | 기술사(화공안전) |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 산업기사(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
| | 자원 |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
| 농업 | 일반농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잠업 | | |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
| | 식물검역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
| | 농화학 | 기술사(농화학) | 기술사(농화학) | 기사(농화학) | |
| | 축산 |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 기사(축산, 식품) |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
| 녹지 | 산림자원 |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 | 산림보호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 | 산림이용 |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
| | 조경 |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 기사(조경, 자연환경생태복원, 산림) |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
| 수의 | 수의 | 수의사 | 수의사 | |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 | 일반수산 | | | | |
| | 수산제조 | | | | |
| | 수산증식 | | | | |
| | 어로 | | | | |
| | 수산물검사 | | | | |
| | 해양교통시설 | | | | |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

| 직렬 | 계급 | | 5급 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
| | 선박기관 | |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
| 보건 | 보건 |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 | 응급구조사2급 |
| 의무 | 일반의무 | | 의사, 한의사 | | |
| | 치무 | | 치과 의사 | | |
| 약무 | 약무 |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 약제 | | | | |
| 간호 | 간호 | | | 간호사, 조산사 | |
| 환경 | 일반환경 |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 직렬 |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 직류 | | | | |
| 환 경 | 수 질 |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 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 | |
| | 대 기 |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 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 | |
| | 폐 기 물 |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 산업기사(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 |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 | |
|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자가용조종사 | | |
| | 정 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산업기사(항공) | | |
| 시 설 | 도시계획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 | |
| | 일반토목 수도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 직렬 \ 직류 | | 계급 | | |
|---------|--------------------|--|---|--|
|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시 설 | 농업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건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지적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측지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
| | 교통시설 도시교통 시설 |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디자인 |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 기사(시간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 산업기사(시간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
| 통 신 | 통신사 |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
| | 통신기술 | | | |
| | 전송기술 | | | |
| | 전자통신 기술 | | | |

비 고 :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 계급 | | 기능 6·7급 | 기능8급이하 |
|------------------------|------------------------|---|--|
| 직렬 | 직류 | | |
| 토목 | 토목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보신, 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제도, 조경, 지적) |
| 건축 | 건축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 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운수운들,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
| 통신 | 통신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화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
| <u>전화</u> <u>상담</u> | <u>전화</u> <u>상담</u> | | 기능사(정보기기운용) |
| 전기 | 전기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 기계 | 기계 |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영사, 인쇄, 승강기) |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립, 자동차점검,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승강기) |
| | 영사 | 산업기사(영사) | 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축소사진, 사진제판) |
| <u>열관리</u> | <u>열관리</u> | 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 | 기능사(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
| 운전 | 운전 | | 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
| 화공 | 화공 |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 | 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
| 가스 | 가스 | 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 기능사(가스,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도, 위험물관리) |

| 직렬 | 계급 | | 기능 6·7급 | 기능8급이하 |
|------------------------|------------------------|---|---|--------|
| | 직렬 | 직류 | | |
| <u>선박</u> <u>항해</u> | <u>선박</u> <u>항해</u> |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급 항해사이상 |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선체의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 |
| 선박 기관 | 선박 기관 | 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 |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선박기관정비)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 |
| 농림 | 영림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 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
| | 원예 | | | |
| 보건 | 보건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 |
| 간호 조무 | 간호 조무 | | 간호조무사 | |
| <u>위생</u> | <u>위생</u> |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폐기물처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영양사, 오물처리 사 1급 | 기능사(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 품가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 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오물처리사 2급 | |
| | <u>사역</u> | | | |
| <u>조리</u> | <u>조리</u> | | | |
| 사무 보조 | 워드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 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 |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 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 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 | |
| | 필기 |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 문속기 3급 | |
| | 계리 | | 주산2급, 주산3급, 부가2급, 부가3급 | |
| | 사서 | | 준사서 | |
| | 전산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 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 |

- 비 고 : 1. 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전기·통신·토
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 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 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
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분야(직렬·
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9조제1항 관련)

|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 |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 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0.5 |
|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 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 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 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신설 2006. 2.15>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의3 관련)

1. 행정·보건·의무직군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 구 분 | 6·7급 | | 8·9급 | |
|------|---------------|--|--|--|
| | 가산대상 자 격 증 |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임상심리사2 급 | 물류관리사, 철도교 통안전관리자직업상 담사2급, 사회조사분 석사2급 |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
| 가산비율 | 5% | 3% | 5% | 3% |

2. 기술직(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 |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 |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 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 | | | |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의3관련)

가. 6급이하 및 기능직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행 정 | 일반행정 | - | 변 호 사 변 리 사 |
| | 법무행정 | | |
| | 재 경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 | 국제통상 | | |
| | 노 동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변 호 사 공인노무사 |
| | 문화홍보 | - | 변 호 사 |
| | 감 사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
| | 기업행정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
| | 운 수 | | 물류관리사 |
| 세 무 | 지 방 세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 변 호 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변 호 사 |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 | 농업기계 | | |

| | | | |
|-----|------|--|--|
| | |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p>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 |
| 공 업 | 기계운전 | <p>기 술 사 : 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패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 |

| | | | |
|--------|--|---|--|
| 공 업 | 조 선 | <p>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p> | |
| | 일반전기 | <p>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p> | |
| | 전 자 | <p>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 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메카트로닉스,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 |
| | 원 자 력 | <p>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 열관리</p> | <p>기사자격증 간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격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p> |
| | 금 속 | <p>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 |
| | 야 금 | <p>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 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p> | |
| 섬 유 | <p>기술사: 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 | |

| | | | |
|-----|-------|--|--|
| 공 업 | 일반화학 | <p>기술사: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위험물, 가스</p> <p>기사: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산업기사: 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 |
| | 자 원 | <p>기술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p> <p>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p> <p>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p> <p>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p> | |
| 농 업 | 일반농업 | <p>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
| | 잠 업 | <p>기사: 기사: 생물공학</p> <p>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p> | |
| | 식물검역 | <p>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p> <p>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p> <p>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p> <p>기능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 |
| | 농 화 학 | <p>기술사: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 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산업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기능사: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 |
| | 축 산 | <p>기술사: 축산, 식품</p> <p>기사: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축산, 식품</p> <p>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 성동위 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 감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 정사 |
| | 생명유전 | <p>기술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p> <p>기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p> <p>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p> <p>기능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 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

| | | | |
|-------------|---|---|--|
| 녹 지 | 산림자원 |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산림 기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 |
| | 산림보호 |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산림 기사: 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업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산림 | |
| | 산림이용 | 기술사: 산림 기능장: 산림 기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 |
| | 조 경 |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기능사: 조경, 산림 |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잠수 | |
| | 일반수산 |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 |
| | 수산제조 | 기술사: 수산제조, 식품 기사: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 |
| | 수 산 물 검 사 | 산업기사: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수산식품가공 | |
| | 수산증식 | 기술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수산양식 | |
| | 어 로 | 기술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질환경, 어병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어로 | |
| 해양교통 시 설 |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 |

| | | | |
|------|------|---|--|
| 보 건 | 보 건 | <p>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p> <p>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p> <p>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기능사: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p>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p>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p>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p>기술사: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p> |
| 환 경 | 일반환경 | <p>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능장: 산림</p> <p>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 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

| | | | |
|----|------|---|------------------------------|
| 환경 | 수질 | <p>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능장: 산림</p> <p>기사: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
| | 대기 | <p>기술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산림</p> <p>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p> <p>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 용: 위생사 |
| | 폐기물 | <p>기술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산림</p> <p>기사: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 용: 위생사 |
| 시설 | 도시계획 |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건축일반시공</p> <p>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건축사 |
| | 일반토목 |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 농업토목 |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시 설 | 건축 | <p>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
| | 측지 | <p>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 |
| | 교통시설 |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p> | |
| | 도시교통설계 | <p>기능장: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 |
| | 디자인 | <p>기술사: <u>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u></p> <p>기사: <u>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u></p> <p>산업기사: <u>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u></p> <p>기능사: <u>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u></p>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
| 통신 | 통신사 | <p>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p> | |
| | 통신기술 | <p>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 |
| | 전송기술 | <p>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 |
| | 전자통신기기 | <p>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p> | |
|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 |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연구·지도직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공업연구 농촌지도 | 기계 농업기계 | <p>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p>기능사: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 |
| 공업연구 | 전기 | <p>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전기공사, 전기기기</p> <p>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p> <p>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기능사: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p> | |
| | 전자 | <p>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전자기기</p> <p>기사: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기능사: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 |

| | | | |
|------|---|--|---|
| 공업연구 | 금속 | <p>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p> | |
| | 섬유 | <p>기술사: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p> <p>기능장: 염색</p> <p>기사: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 |
| | 화학 | <p>기술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위험물관리, 가스</p> <p>기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산업기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p> | |
| 화학 | <p>기술사: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p> | | |
| 물리 | <p>기술사: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p> <p>기사: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p> <p>산업기사: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p> | | |
| 농업연구 | 작물 | <p>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벼식충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 기능사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농 산물품질관 리사 |
| 농촌지도 | 농업 | | |

| | | | |
|------|------|---|---|
| 농업연구 | 원 예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농촌지도 | 원 예 | 산업기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 |
| 농업연구 | 농업환경 | 기술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 |
| | 잠업곤충 | 기술사: 생사 기사: 생물공학생사기사2급(1999. 3. 27이전 취득) | |
| 농촌지도 | 잠업 | | |
| 농업연구 | 작물보호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 생명유전 |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종자, 식품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 농촌생활 | 기술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
| 생활지도 | 생활 |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2급, 영양사, 위생사 |
| 농촌지도 | 농업경영 | | |
| 농촌지도 | 농촌사회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1급, 평생교육사2급 |

| | | | |
|--------|------|--|---|
| 농업연구 | 농 공 | 기 술 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농촌지도 | 축 산 | 기 술 사: 축산, 식품 기 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
| 녹지연구 | 임 업 | 기 술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 을 장: 산림 | |
| | 조 경 | 기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 |
| 농촌지도 | 임 업 | | |
| 수의연구 | 수 의 | 기 술 사: 축산 기 사: 축산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
| 농촌지도 | 가축위생 | 산업기사: 축산 기 능 사: 축산 |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기 술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 |
| | 수산자원 | | |
| 어촌지도 | 어 촌 | | |

| | | | |
|-------------|------|---|---|
| 해양수산 연 구 | 수산양식 | 기 술 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수산양식 | |
| | 수산공학 | 기 술 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 능 사: 어로 | |
| | 수산가공 | 기 술 사: 수산제조, 식품 기 사: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수산식품가공 | |
| 보건연구 | 의 학 | -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 | 약 학 | -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공중보건 | 기 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기 능 사: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
| 환경연구 | 환 경 | 기 술 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 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 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 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산림 기 사: 공업화학, 조정,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 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 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공업화학, 조정,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 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조정,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

| | | | |
|------|------|---|---------------------|
| 시설연구 | 토 목 |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농촌지도 | 농업토목 |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시설연구 | 건축 | <p>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특별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제15조제4항 관련)

| 임용예정직급 | | 2급· 지도관 | 3급· 지도관 | 4급· 지도관 | 5급· 지도관 | 6급· 기능직 6급 이상· 지도사 | 7급· 기능직 7급 이상· 지도사 | 8급· 기능직 8급 | 9급· 기능직 9급 이하 |
|----------------|--|---|---------------------|---------------------|----------------|--------------------------------|--------------------------------|--------------------|------------------------|
| 직무분야 | | 경 찰 공 무 원 | 경 무 관 | 총 경 | 경 정 | 경 경 감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 | | 소 방 공 무 원 | 소 방 감 | 소 방 정 | 소 방 령 | 소 방 경 위 소 방 | 소 방 장 | 소 방 교 | 소 방 사 |
| | | 군 인 | 대 령 | 중 령 | 소 령 | 대 위 | 중 위 | 소 준 위 원 상 중 사 사 | 하 사 |
|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포함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 교 수 (3년이상) | 교 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 임 사 강 | | | |
| |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 | 24호봉 이 상 | 16호봉 이 상 | 12호봉 이 상 | 11호봉 이 하 | | |
| | |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 | 17호봉 이 상 | 11호봉 이 상 | 7호봉 이 상 | 6호봉 이 하 | | |
| | |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 | 19호봉 이 상 | 13호봉 이 상 | 9호봉 이 상 | 8호봉 이 하 | | |
| | 관 사·검 사 | 9호봉 이 상 | 6호봉 이 상 | 4호봉 이 상 | | | | | |
| | 기 능 직 공 무 원 | | | | | 6급 이 상 | 7급 | 8급 | 9급 이 하 |
| |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 학 위 자 학 위 자 |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 | | | |
| |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 | | | 6년 | 3년 | 3년 | 3년 |

비 고 : 1. 윗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별표 9] <개정 96.3.26, 07.5.23>

[별표 15]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2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 계급 직렬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 복지,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 전 산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 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 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 어 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공 (기 계)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 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 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 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 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 계), 운송용조종사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 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 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 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 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 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 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 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 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 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 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 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 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 산업기사(운환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 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 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 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 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 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 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 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 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

| 직렬 | 계급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공 (전 기) | 업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
| 공 (금 속) | 업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 공 (섬 유) | 업 |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
| 공 (화 가 스) | 업 공 스) |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
| 공 (자 원) | 업 원) |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
| 농 (농 업) | 업 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
| 농 (축 산) | 업 산) |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 기사(축산, 식품) |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
| 녹 지 | 지 |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 수 의 | 의 | 수의사 | | |
| 해양 수 (수 산) | 산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향료 표지, 식품, 수질환경)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향료표지, 수질환경, 식품) |

| 직렬 \ 계급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해양 수산 (선박) |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 보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 식품위생 |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
| 의료기술 |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
| 의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 |
| 약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간호 | | 간호사, 조산사 | |
| 환경 |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
| 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
| 시설 (도시계획)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

| 계급 직렬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시 설 (토목, 수 도 토 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시 설 (건 축)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시 설 (지 적) |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시 설 (측 지)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
| 시 설 (교 통) |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 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
| 통 신 (통 신 사) |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
| 통 신 (통신기술) |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
| 통 신 (전자통신 기술) |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

2. 연구사

| 계급 직렬 | 연 구 사 |
|-----------------|--|
| 공업 연구 |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p> |
| 농업 연구 | <p>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p> |
| 농업 연구 (잠업곤충) | <p>기술사(생사)</p> |
| 농업 연구 (축 산) | <p>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p> |
| 농업 연구 (농 공) |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p> |
| 녹지 연구 | <p>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p> |
| 해양 수산 연구 | <p>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p> |

| 직렬 | 계급 | 연구사 |
|--------------|----|--|
| 보건연구 | |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
| 환경연구 | |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
| 시설연구 (토목) |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
| 시설연구 (건축) |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

3. 지도사

| 직렬 | 계급 | 지도사 |
|------|----|---|
| 농촌지도 |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 생활지도 | |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
| 어촌지도 |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특별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기능직

| 직렬 \ 구분 | 기능7급 이상 | 기능8급 이하 |
|---------|--|--|
| 토 목 | <p>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p> | <p>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
| 건축 | <p>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p> <p>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건축사</p> | <p>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
| 통신 | <p>기술사(정보통신)</p> <p>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p> <p>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p> | <p>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p> |
| 전기 | <p>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p> <p>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p> <p>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p> | <p>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p> |
| 기계 |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p> <p>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p> | <p>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p> |

| | | | |
|------------------|---|---|---|
| 화 | 공 |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 가 | 스 |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
| 선 박 항 해, 선 박 기 관 | |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축,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 농 | 림 |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
| 보 | 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 위 | 생 |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

비고: 영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 | | | | | | |
|--------------------|-----|---------------------------------|-------|--|-----|--|---|
| ※등록번호 | | 제 회 번 | | ⑥ 응시연도 및 회 수 | | ()년도제 회 | |
| ※ 급 | | 직 | | 응시지구(기호) 응시번호 | | 지구 | 번 |
| ① 성명 한글 (한문) | | ② 생년월일 . . . (세) ③ 주민등록번호 | | ④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 | ⑤ 희망지역 제1지역 시군 제1지역 시군 | |
| | | | | | | ※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①인 ①인 | |
| ⑦ 현 주소 | | (사진부착) | | | | | |
| ⑧ 병역 | | | | | | | |
| 미필사유 | | | | | | | |
| ⑨ 학 력 | | | | | | | |
| 부터 | 까지 | 학 력 | | 전공·부문·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자 격 면 허 | | | | ⑪ 상 별 | | | |
| 연 월 일 | 종 별 | | 연 월 일 |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특 기 | | ⑬ 취 미 | | ⑭ 운 동 | | ⑮ 종 교 | |
| | | | | | | | |
| ⑯ 경 력 | | | | | | | |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 | 발령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⑥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⑦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 ⑧ 병 역 ... 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면제 처분 기타 사유를 기입한다
- ⑨ 학 력 ...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입한다
- ⑩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 ⑪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 ⑫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 ⑬ 재 산 상 황 ... 부동산은 가옥·임야·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평수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 ⑭ 가 족 상 황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 ⑮ 우 무 인 ... 오른쪽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6. 민간인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재

나.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와 동일하게,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를 통·반까지 명기

다. 가족사항중 남자 기혼자는 처가를 여자 기혼자는 친가를 미혼자는 미혼으로 기재

라.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 자로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배경이 되는 인물을 기재

마. 현재란은 현주소와 동일하여야 한다

바. 해당없는 란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추후 본인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공주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계 급 | 직 렬 | 추천인원수 |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첨 부 : 1. 임용자 명단 1부
-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 3. 미임용자 관계서류 각 1부

공 주 시 장 직 인

시 험 요 구 서

| | | | | | | | | |
|---|-----------|---------|-----------------------|------------------------------|---------------------|---------------------------------------|-----------------------|--|
| 접수번호 | 기 관 | 개 인 | | | | | | |
| ①기관명 | 소속 | | ②시험 구분 | | ③임용예정 직 계 급 | 직명 | | |
| | 요구 | | | | | 직류 | | |
| ④성 명 | 한글 | | ⑤연령 | 만 세 | ⑥현 직 급 | 계급 | 급 | |
| | 한자 | | | | | 직명 | | |
| ⑦선 택 과 목 | 가. | | ⑧필기시험 면제사유 | | ⑨제 1 차 시험 면제사유 | 년 월 일 시행 제 회 1차 합격 응시번호 | | |
| | 나. | | | | | | | |
| ⑩자격·면허 훈련 등 | | | ⑪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 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 대장 원본 확인 | 대장번호 | | |
| | | | | | | 확 인 자 명 성 명 | | |
| 위와같이 요구함. | | | | | | 계 인 | (사진) (3.5cm×4.5cm) | |
|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 | | | | | | |
| ※ 시 험 시행사항 | 시 행 차 수 | 1 | 2 | 3 | | | | |
| | 시 행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회 수 | 제 회 | 제 회 | 제 회 | | | | |
| | 응 시 번 호 | | | | | | | |
| | 결 과 | | | | | | | |
| 응시 번호 | | 응 시 표 계 | | | | 계 인 | (사진) | |
| 년 시행 제 회 시험 임용 예정 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험 실시 기관 의 장 (인) | | | | | | | | |
| | | | | | | 위 요구서에 첨부하 는 것과 동일한 원 판, 동일한 규격 | | |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⑩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 ②란은 “전직”, “특별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개시 1시간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2.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용구(만년필 또는 볼펜)를 지참하여야 한다.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1.~3.(생략) 4. 의사 5.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심의 의결대상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 <p style="text-align: center;"><u>제 1 장 총 칙</u></p> <p>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 -----<u>참석위원(위원 1인 이상)</u>이----- ----- 1.~3.(현행과 같음) 4. <삭 제> 5.(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p>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3.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4.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p> | <p>회의록 서명 날인자 변경</p> <p>서면심의 대상안건 명시</p> |
|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 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u>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u> 하여야 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u>제 2 장 시 험</u></p> <p>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 ----- ----- ----- -----<u>신문·방송</u>----- ----- -----</p> | <p>공고방법 변경</p> |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 <p>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p> <p>②(생 략)</p> <p>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생 략)</p> <p>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u>사역직류</u>의 공무원</p> <p>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18호의 <u>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u>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p> <p>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u>규정에</u> 의한 특수지근무당수당 지급대상지역 의 공무원</p> <p>제19조(전직 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u>규정에</u> 의하여 <u>전직시험</u>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p> <p>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u>규정에</u> 의하여 전직 시험이 <u>면제되는</u>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장명칭 신설></p> <p>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p> | <p>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현행과 같음)</p> <p>1. 특수직무분야 : ----- ----- <u>사역직류</u> -----</p> <p>2. 특수환경 : ----- -----<u>장려수당</u> 지급 <u>대상</u>----- -----</p> <p>3. 특수지역 : ----- <u>제12조 및 별표 10의</u> <u>규정에</u>----- ----- -----</p> <p>제19조(전직 시험의 면제) ①----- ----- <u>전직시험을</u> <u>면제할 수 있는</u>----- ----- --</p> <p>②----- ----- <u>면제할 수 있</u> <u>는</u> ----- -----</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임 용</p> <p>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p> | |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 <p>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p> | <p>----- ----- ----- ----- ----- ----- ----- ----- ----- ----- -----</p> | |
| <p>제25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③(생략)</p> | <p>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③(현행과 같음)</p> | |
| <p>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 <p>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 표준안에 따라 특별승진 요건 정비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 위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 <p>< 신 설 ></p> | <p>원</p> <p>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p> <p>제33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p> | <p>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우대사항 신설</p> |

공주시 공고 제2010-451호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동 조례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임.
- 「농지법」이 법률 제9721호, 2009. 5. 27 개정되어 2009. 11.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건설과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 041)840-2485 FAX : 041)854-249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0-453호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인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동 시행규칙은 마곡사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 조례가 2010. 3. 31. 폐지됨에 따라 동 규칙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관광축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관광축제팀

주 소 : 공주시 교동120 (우)314-810 전화 : 041-840-2837 FAX : 041-840-2848

4. 참고사항

이 폐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